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1102 판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태훈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5. 4. 7. 접수 제3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 11. 9. 접수 제14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D의 자녀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D은 1996. 10. 22., C는 2000. 9. 20.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1995. 4. 7.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 접수번호 제3174호 소유권이전등기이다. 이하 '제1차 등기'라 한다)가, 2007. 11. 9.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 접수번호 제14542호 소유권이전등기이다. 이하 '제2차 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D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치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등기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제1차 등기를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등기원인이 부존재하는 제1차 등기 및 그에 터 잡아 마쳐진 제2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제1차 등기 경로 무렵 D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그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2022. 12. 19.자 준비서면으로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원고 본인 및 D의 다른 자녀인 E, F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제1차 등기 관련 등기원인자료 내지 등기신청자료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1차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동근

별지